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*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.

* 「근로기준법」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「감염병예 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

| 사업장 명칭 | 현대오토에버 | 사업주 성명 | 서정식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성명 | | 근로자 <u>주민등록번호</u> | |
| 유급휴가 기간(일수) | ~ (일) | 유급휴가 사유 |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|

- 1. 사업주는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입원 또는 격리 등을 사유로 근로자*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,
 - *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
- 2.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,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*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*「감염병예방법」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
- 3.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사업주 : (서명)

근로자 : (서명)